

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 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	○		※ 추가선택품목 신청서	-	- 견본주택 비치
	○		※ 자금조달계획서	-	- 견본주택 비치
	○		특별공급신청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, 인터넷청약('청약Home'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개인정보활용동의서/ 무주택서약서	본인	- 견본주택 비치
	○		청약통장가입증(가입) 확인서	본인	-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서 발급(현장접수자에 한함) -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(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) - 국가유공자, 철거민, 도시재생부지제공자,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
	○		신분증	본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	본인	- 본인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서류제출 시 본인만 인정되며, 신청자 본인만 신청가능
	○		인감도장	본인	-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 시 제출생략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과거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-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 사항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 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-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
		○	출입국사실증명원	직계존속 직계비속	-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- 직계존속,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
		○	복무확인서	본인	-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
신혼 부부 특별 공급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-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 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 (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)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,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)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	-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단,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) [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-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-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 제출 (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 가능해야 함)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- 견본주택 비치
		○	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- 입양의 경우
	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해당자	-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(견본주택에 비치)
부적격 통보 받은 자		○	무주택 소명서류	해당 주택	-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(제출용)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-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- 소형/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-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서류	본인	-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제3자 대리인 신청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- 본인발급용 /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
	○		위임장	본인	-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견본주택에 비치
	○		신분증	대리인	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여권(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)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19)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

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 서류

해당 자격	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
근로자	일반근로자 (2020년)	① 재직증명서 ※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※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	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또는 세무서
	금년도 신규취업자 / 금년도 전직자 (2021년)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※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,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	①, ② 해당 직장
	전년도 전직자 (2020년)	① 재직증명서 (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)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원본 : 직인날인)	①, ② 해당 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 (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)	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(직인날인)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 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(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 / 간이과세자 / 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2019년)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	①, ②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[단,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증명(원본) 반드시 제출]	① 세무서
	신규 사업자	① [국민연금 가입자]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② 국민연금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③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③ 세무서 또는 등기소
	법인 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(원본)(2019년) ② 법인등기부등본(원본)	① 세무서 ② 등기소
	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(직인날인)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당해회사 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(직인날인)	① 해당 직장 또는 세무서 ②, ③ 해당직장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	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	① 행정복지센터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 근로자		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②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)	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 관리공단
무직자		① 비사업자 확인각서(건본주택에 비치) -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	① 접수 장소

※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4.19) 이후 발행 및 상세 발급분에 한합니다.